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단서 중 "제38조의4제3항"을 "제38조의4제3항 및 제39조의 4제3항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제6호까지 및 제6호의2"를 "제6호까지, 제6호의2 및 제6호의3"으로 한다.

6의3. 제6장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

제21조제1항 중 "등의 업무"를 "등, 제39조의5제3항 및 제39조의7제3항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업무"로 한다.

제2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

제24조제2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"그 부대비용"을 "그부대비용, 제39조의4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그 부대비용"으로 한다.

- 10.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
- 11.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수수료 등 수입

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5(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) ① 공사는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, 제24조의3제2

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및 제24조의4에 따른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- ②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- 1.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- 2.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
- 3.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
- 4.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수수료 등 수입
- 5.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
- 6. 금융안정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
- ③ 공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- 1. 제2항제1호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
- 2. 제2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
- 3. 제2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
- 4.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
-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

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.

- ⑥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 전할 수 있다.
- ⑦ 금융안정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(제30조의4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- ⑧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 중 "신용질서의 안정"을 "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"로 한다.

제38조의3제1항제1호 중 "제38조"를 "제38조 또는 제39조의4"로 한다. 제6장의 제목 "벌칙"을 "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"으로 한다. 제39조의4를 제39조의9로 하고,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4(자금지원의 결정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, 금융감독원장, 한국은행 총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- 1.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 우
- 2.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
- 3.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,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게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39조의5(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) ①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 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

- 가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(이하 이 장에서 "신청회사"라 하며, 신청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자금지원의 원인이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한다.
- 1. 신청회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
- 2.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 신청회사의 유동성 또는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
- 3. 제39조의6에 따른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회사의 경영 건전성과 금융제도 안정에 적합할 것
-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할 경우 신청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, 자금지원의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방식·조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보금융회

- 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⑦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회사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 지하여야 한다.
-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·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.
- 1. 신청회사의 업종 및 현재 재무상태
- 2. 신청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의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
- 3. 신청회사의 유동성 또는 자본적정성 개선 등 경영건전성 제고 가능성
- 4. 신청회사에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었는지 여부
- 5. 그 밖에 신청회사의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에의 기여 가능성
- ⑨ 그 밖에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9조의6(경영건전성제고계획) ① 신청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(이하 "경영건전성제고계획"이라 한다) 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
- 2. 공사의 자금지원 이외에 유동성 또는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방 아
- 3.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
- 4. 그 밖에 경영건전성제고를 위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②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작성의 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, 신청회사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39조의7(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 등) ①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(이하 이 장에서 "피지원회사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공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확인하거나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피지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공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피지원회사

에 대하여 검사할 것을 요청하거나, 공사 소속 직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금융감독원장은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 ⑥ 공사는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공사의 의견을 첨부할수 있다.

제39조의8(자금지원에 관한 특례) 공사가 제39조의4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는 「상법」 제344조의3제2항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

제39조의9 앞에 "제7장 벌칙"을 삽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

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제1호 중 "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"을 각각 "한국자산관리공사"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"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산업은행 회장"을 "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19조 중 "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"을 각각 "한국자산관리공사는"으로 한다.

제1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.

-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4장의2(제23조의2, 제23조의3, 제23조의4, 제23조의5, 제23조의6, 제23조의7, 제23조의8, 제23조의9)를 삭제한다.
- ③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9호 중 "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(이하 "금융안정기금"이라 한다) 및 제29조의2"를 "제29조의2"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7호 중 "금융안정기금·기간산업안정기금"을 "기간산업안정기금"으로 한다.

제29조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운영) ① ~ ③ (생 략)	제10조(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	4
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	
로 의결한다. 다만, <u>제38조의4제</u>	<u>제38</u> 조의4제 <u>3</u>
<u>3항</u> 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	<u>항 및 제39조의4제3항</u>
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	
결한다.	.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업무의 범위) ① 공사는	제18조(업무의 범위) ①
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	
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	
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3. 제6장에 따른 금융제도의
	<u>안정을 위한 자금지원</u>
7. 제1호부터 <u>제6호까지 및 제6</u>	7 <u>제6호까지, 제6호의</u>
<u>호의2</u> 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	<u>2 및 제6호의3</u>
무	
8.・9. (생 략)	8.•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	제21조(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
제출 요구 등) ① 공사는 부보	제출 요구 등) ①
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	

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,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,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,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~ ⑧ (생 략)

- 제24조(예금보험기금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.
 - 1. ~ 5. (생략)

<신 설>

-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- 1. ~ 9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u>. 0</u> ,
제39조의5제3항 및 제39조의7
제3항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
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업무
·.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예금보험기금의 설치) ①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
②
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지
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
11.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수

- 10. (생략)
-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- 1. (생략)
- 2. 보험금,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,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,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

3. ~ 5. (생 략) ④ (생 략) <신 설>

수료 등 수입
<u>12</u> 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③
1. (현행과 같음)
2
그 부대비용, 제39조의4에 따
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
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
④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5(금융안정계정의 설치
등) ① 공사는 제39조의4에 따

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

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

고,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

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및 제24

조의4에 따른 특별계정과 구분

②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

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- 1.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- 2.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
- 3.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
- 4. 제39조의4제4항에 따른 수수 료 등 수입
- 5. 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금
- 6. 금융안정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
- ③ 공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④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
- 1. 제2항제1호에 따른 예금보험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

의 용도에 사용한다.

- 2. 제2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
- 3. 제2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

4.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원 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

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 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 부를 유예할 수 있다.

⑥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 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의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. ⑦ 금융안정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 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 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(제 30조의4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 다.

⑧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에 관하 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<u>령으로 정한다.</u>

제26조의2(예금보험기금채권의 제26조의2(예금보험기금채권의

② ~ ⑥ (생 략)

제38조의3(채권양도의 특례) ① | 저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(이하 이 조에서 "공사등"이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(指名債權)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(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 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)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 을 공고함으로써 「민법」 제45 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 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 만, 채무자, 물상보증인(物上保 證人)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 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 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.

1.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

三 % <u>~</u>) ①
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8조의3(채권양도의 특례) ① -
1

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

- 2. · 3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6장

<신 설>

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----- 제38조 또 는 제39조의4-----
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6장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

제39조의4(자금지원의 결정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 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 관, 금융감독원장, 한국은행 총 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 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 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 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을 요청할 수 있다.

- 1.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것 으로 우려되는 경우
- 2.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

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

- 3.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

 우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

 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 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4 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 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 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자금지 원을 하는 경우, 지원 대상인 부 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 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 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

<신 설>

회사에게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 록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 하여는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9조의5(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) ①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가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(이하이 장에서 "신청회사"라 하며, 신청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자금지원의 원인이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신청회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<u>것</u>
- 2.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중 하 나 이상의 사유로 신청회사의 유동성 또는 자본적정성 개선 을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것
- 3. 제39조의6에 따른 경영건전 성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회 사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제도 안정에 적합할 것
-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할 경우 신청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의 내용 등을 정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, 자금지원의 내용 등을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.
- ⑥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 을 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방식

- ·조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 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 주회사와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.
- ⑦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회사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・방법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- 1. 신청회사의 업종 및 현재 재 <u>무상태</u>
- 2. 신청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의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
- 3. 신청회사의 유동성 또는 자

 본적정성 개선 등 경영건전성

 제고 가능성
- 4. 신청회사에 「금융산업의 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<신 설>

- 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부과 되었는지 여부
- 5. 그 밖에 신청회사의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에의 기여 가 능성
- ⑨ 그 밖에 자금지원의 요건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9조의6(경영건전성제고계획)
 - ① 신청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신청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(이하 "경영건전성 성제고계획"이라 한다)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
 - 2. 공사의 자금지원 이외에 유동성 또는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방안
 - 3.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 하기 위한 기간
 - 4. 그 밖에 경영건전성제고를위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 - ②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작성의

<신 설>

세부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, 신청회사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제39조의7(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 등) ①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 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 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(이하 이 장에서 "피지원회사"라 한다)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 별로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.

- ② 공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.
-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피지원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확인하거나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피지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공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 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피지원회사에 대하여 검사할 것을 요청하거나, 공사 소속 직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금융감독원장은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이행 상황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받은 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 ⑥ 공사는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공사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.

제39조의8(자금지원에 관한 특례) 공사가 제39조의4에 따라 부보 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

<신 설>

<u><신</u> 설> 제39조의4 (생 략) 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는 「상법」 제344조의3제2항 및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

<u>제7장 벌칙</u> <u>제39조의9</u> (현행 제39조의4와 같 음)